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CF, ACF-RA, COA, COA-RA, DJA-RA, IOE-RB
 책임 기관: Chief of Security and Compliance; Chief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MCPS 소유지에서의 등록된 성범죄자 Registered Sexual Offenders on MCPS Property

I. 목적

성인 또는 청소년 등록 성범죄자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소유지 내에 출입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II. 정의

- A. *Maryland* 성범죄자 등록부(*Sex Offender Registry*)는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Public Safety and Correctional Services 에서 관리하며, 법에 명시된 특정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나열합니다. 이 등록 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조회도 가능합니다. 또한 담당 부서는 법 집행 목적을 위해 법 집행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 성범죄자 등록부를 성인 성범죄자 등록부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 또는 MCPS 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 B. MCPS *소유지(property)*는 MCPS 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부지를 포함하여, MCPS 버스, 기타 MCPS 차량, MCPS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해당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 모든 MCPS 학교나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 C. *책임 관리자(Responsible administrator-관리자)*는 MCPS 학교 교장 또는 MCPS 소유지에 있는 보육시설의 소유자/운영자를 의미합니다.
- D. 이 규정의 목적상 *학사연도(School year)*는 7 월 1 일부터 다음 해 6 월 30 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E. *성범죄자(Sexual offender-등록자/registrant)*는 아동 성범죄자, 성폭력 범죄자,

성폭력 가해자 또는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아동 유괴와 관련된 기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담당 부서와 지역 법 집행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또한 Maryland 성범죄자 등록부(Sex Offender Registry)에 등재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 a. *청소년 등록자(juvenile registrant)*는 성인이 저지른 경우 법에 명시된 특정 성범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청소년 범죄자로 판결받아 Maryland 주 검사에 의해 Maryland registry of juvenile sex offenders 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는 14 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판결받은 청소년 범죄자(Adjudicated delinquent)*는 청소년 사법 시스템(juvenile justice system)에서 청소년 법원(juvenile court)의 판사가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한 청소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 b. 청소년 등록자에 대한 소년법원의 관할권이 종료되면 해당 청소년은 청소년 등록부에서 삭제됩니다.

III. 이슈

등록자 또는 청소년 등록자는 아래 A 와 B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MCPS 소유의 학교나 보육시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A. 학생의 부모/보호자

1. Maryland 법에 따라, MCPS 학교나 MCPS 소유지 내 보육시설에 있는 학생의 부모/보호자인 등록자나 청소년 등록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학교나 보육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a. 등록자/청소년 등록자가 관리자에게 자신의 존재 및 방문 목적을 즉각적으로 통지하고, 또한
 - b. 지난 학년도에 관리자, 교육감/지정인 또는 교육위원회가 구체적인 서면 허가를 내린 경우.
2. 관리자가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권한 이 부여된 날짜와 목적
 - b. 방문이 이루어질 학교 내부 또는 학교 부지 내의 정확한 위치

- c. 등록자 또는 청소년 등록자가 학교 시설에 출입할 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학교 교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 d. 관리자가 승인한, 등록자/청소년 등록자가 공연, 운동 행사 또는 여러 학생이 참여하는 기타 모임에 참석할 목적으로 학교 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 등록자/청소년 등록자와 동행할 사람의 이름
3.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의 관리자는 등록자 또는 청소년 등록자의 출입 허가 요청에 대해 등록 거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B. 등록 유권자

- 1. MCPS 학교와 사무실은 일반인이 투표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Maryland 예비선거일과 총선거일에 교직원 및 학생은 휴교합니다.
- 2. 주법은 등록자/청소년 등록자가 투표를 목적으로 선거 투표일에 MCPS 소유지에 출입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 허가합니다: 등록자/청소년 등록자가 적법하게 등록된 유권자이고 등록자/청소년 등록자의 투표소가 해당 MCPS 건물일 경우.
- 3. 등록자가 유권자 등록을 제대로 하였고 등록자의 투표소가 해당 MCPS 건물에 있는 경우, 관리자는 등록자/청소년 등록자의 투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C. MCPS 와 거래하는 계약업체는 고의로 등록자나 청소년 등록자를 학교에서 일하도록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자의 의무는 MCPS 규정 DJA-RA, 장비, 소모품 조달 및 서비스 조달(Procurement of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과 Division of Procurement 에서 발행한 추가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D. 법 집행기관의 통지

- 1. MCPS 는 Maryland 법에 명시된 대로 성인 성범죄자 등록부 또는 청소년 등록부에 개인이 등록되었음을 MCPS 에 통보하는 지역 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양해각서를 법 집행기관과 체결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성범죄자로부터 등록 신고서를 받은 후 3 근무일 이내에 학교 교육감/지정인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2. 교육감/지정인은 지역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10 근무일 이내에, 교육감이 성범죄자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의 교장 또는 교육감이 감독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MCPS 소유지의 보육 시설 관리자에게 등록 명세서를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¹

IV. 행정 절차

등록자, 청소년 등록자 및 과거 청소년 등록자의 교육

- A. 만약 청소년 등록자가 판결받은 청소년 범죄자이며 법원 명령에 의해 Department of Juvenile Services(DJS)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청소년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JSEP)에서 교육을 제공하며 해당 학생은 더 이상 MCPS 학생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 B. 만약 청소년 등록자가 판결받은 청소년 범죄자이나 지역사회로 석방되었으면 MCPS 학생으로 등록이 유지됩니다.
- C. Maryland 법에 따라, MCPS 는 등록자나 청소년 등록자에게 MCPS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또는 보육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등록자/청소년 등록자의 교육은 다음 장소 중 한 곳에서만 허용됩니다:
 1. MCPS 소유지 외의 비 MCPS 프로그램 옵션:
 - a. 지역 아동 및 청소년 연구소(Regional Institut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RICA)
 - b. 법률에 따라 결정된 특정 비공립 교육 프로그램
 2. MCPS 프로그램 옵션:
 - a. 가정 및 병원 교육(Home and hospital teaching-HHT) 프로그램(MCPS 소유지 외에서)

¹ Annotated Code of Maryland, Criminal Procedure, section 11-709(b)(1-2)

- b.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 D. 청소년 법원의 관할권이 종료될 때까지, MCPS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OSSI)는 해당 MCPS 사무실과 협력하여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1. HHT 는 대체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며 학생의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대체하도록 의도되거나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MCPS 는 HHT 옵션을 학생에게 활용하기 전에 모든 종합 교육 프로그램 옵션을 전부 소진해야 합니다. HHT 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 상황으로 인해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학생에게 핵심 과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단기 서비스로써, MCPS 규정 IOE-RB, *Home and Hospital Teaching* 에 명시된 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 MCPS Office of Special Education 은 적격 장애를 가진 청소년 등록자를 위한 교육 옵션을 파악하기 위해 RICA 또는 비공립 교육 프로그램과 협력합니다.
- E. 청소년 등록자가 더 이상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청소년은 소년 등록부에서 삭제됩니다.
1. 제적된 학생은 판결 이전에 다녔던 소속 학교나 프로그램에 재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이 Montgomery county 의 정당한 거주자 등록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2. OSSI 는 *MCPS Student Code of Conduct* 에 명시된 위반 행위로 인해 징계 조치를 받은 해당 학생들의 배치를 개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관련 출처: 주석 메릴랜드주 형사소송법, §§11-704, 11-704.1, 11-713, 11-721, 11-722; 교육법 §6-113.2

규정 연혁: 신규 규정 2007년 6월 12일; 2024년 8월 27일 개정.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진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www.montgomeryschoolsmd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Well-Being and Student Services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3109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or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